

2011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

< 공고-20호 사업설명회 >

korea Institute of Construcion &
Transportation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

일시 : 2011. 10. 21(금), 10:30

장소 :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3층 1회의실



CONTENTS

1. 공고 과제 및 일반 사항

2. 신청·접수 및 선정평가

3. 연구개발비 계상 기준

1. 공고 과제 및 일반사항



➡ 공고과제 및 예산

금번 공고과제

🕒 1개 사업 1개 과제 공고

건설기술혁신사업

- “기후변화 대비 하천 운영 및 관리 기술 개발” 과제
 - 당해연도 정부출연금 : 9.63억원 이내

연구단과제 추진 체계

과제 구성 체계 및 공모방식

세부과제명	세부연구내용	공모방식	
		금회	2012
1세부과제 : 4대강 친환경시설물 및 하도 유지관리 기술	(1-1)준설하천 하도안정화 기술 및 유지관리 기술 개발	○	
	(1-2)하도 안정화를 위한 유역침식 제어기술 개발		○
	(1-3)하천시설물관리 최적화기술 개발		
	(1-4)신설 수공구조물을 고려한 하천운영 고도화기술 개발		
2세부과제 : 첨단기술(IT/GIS/RS) 기반의 하천계측 및 운영기술 개발	(2-1)IT기반 첨단 하천 센서 개발 및 모니터링 기술		○
	(2-2)첨단기술을 이용한 하천 조사기술 개발	○	
	(2-3)Smart River 정보 관리기술 개발		
	(2-4)첨단기술 기반의 하천운영 및 관리기술 개발		
3세부과제 : 한국형 수문량 분석 선진화 기술 개발	(3-1)한국형 설계강우의 결정방법 개발		○
	(3-2)한국형 설계홍수량 산정방법 개발		
	(3-3)개념적 강우-유출모형을 활용한 한국형 홍수량 산정방법 개발		
	(3-4)홍수빈도해석에 의한 설계홍수량 산정방법 일반화		
4세부과제 : 물안보 확보를 위한 하천의 탄력적 물관리 기술	(4-1)외부환경변화에 따른 하천수량 정량화 기술 개발		○
	(4-2)365일 하천 유량 관리 고도화 기술 개발	○	
	(4-3)탄력적 하천수량 확보 및 관리 기술 개발		○

연구단과제 추진 체계

연구단과제 분리공모 시행에 따른 연구단 구성



공모 신청시 유의사항

연구단 과제 분리 공모 실시

- 우수연구자의 참여기획 확대를 위하여 기존의 일괄 컨소시엄 구성이 아닌 일부 요소 기술을 분리공모과제로 별도 공모
- 금회 공모시 연구단장을 포함한 연구단 컨소시엄을 선정 하고, 나머지 과제는 분리 공모 를 통해 선정기관 선정(2012년)

※ 선정 완료 후 분리공모 과제는 연구단 컨소시엄에 편입하여 과제 추진

신청시 기관 구성

- 연구단 컨소시엄 공모과제 : 필요에 따라 주관/협동/공동/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으로 편성
- 분리공모과제 : 단독 또는 최소한의 공동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으로 편성된 컨소시엄으로 신청

※ 공동연구기관은 위탁연구기관을 둘 수 없음

공모 신청시 유의사항



과제별 주요 연구내용,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는 과제제안요구서(RFP)를 참조하여 작성

- 과제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부연구내용을 일부 가감할 수 있으나,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
- 연차별 지원예산은 RFP에 총 연구개발비가 제시된 경우 총 연구개발비 범위 내에서 편성

※ 총 지원예산 및 연차별 지원예산은 향후 선정평가 결과, 정부예산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

연구개발 성과목표, 지표체계, 실용성 검증 및 사업화 추진계획 등을 필히 제시

- 신청자는 연구개발 성과목표, 지표별 달성 목표치 및 가중치 등을 필히 제시할 것 제시

※ 제시한 성과지표에 사업 공통성과지표를 추후 사전검토, 선정평가를 통해 조정(추가) 가능

※ 과제선정 후 해당 연구책임자(기관)에 대한 진도점검, 관리 및 성과평가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

- 연구성과의 실용화, 사업화로 예상되는 기술/경제/사회/문화적 파급효과와 산출근거 제시
- 현장적용/Pilot Test Bed 등을 통한 연구성과의 실용성 검증, 사업화 계획 을 필히 제시

공모 신청시 유의사항 [계속]

- 기업참여시 **기업부담금**은 “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”의 기준을 따르되, 추가 부담 가능
- 참여기업은 참여하고자 하는 과제와 **관련된 연구** 또는 **사업 수행실적**이 있고, **과제추진시 역할**[자료.기술 조사 또는 제공, 시험시공 현장제공 등]이 **명확**하여야 하며 **연구개발결과**를 직접 **활용**하고자 하는 **기업**에 한함
 - 선정평가시 참여기업의 연구수행실적 및 역할, 연구결과물의 활용계획 등 자격기준 검토하여 연구 참여 여부 결정예정임
- 제안 연구내용의 **지식서비스 분야**[디자인, 설계, 소프트웨어 개발 등] 해당 여부를 사전검토, 선정평가 등을 통해 심층검토하고 해당되는 경우 협약시 반영예정
- 과제성격에 따라 다학제(多學制, multi-disciplinary)간 연구진 구성 필요

공모 신청시 유의사항 [계속]

- ① 국제공동연구 또는 전문가 활용방안
 - 해외 선도기관의 공동연구 등 추진방안 및 전문가 활용계획을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
- ② 기 수행되었거나 현재 수행중인 공고 과제 관련 연구개발결과의 구체적인 연계·통합 및 활용방안을 연구계획에 포함
- ③ 연구수행과정에서 실험이 필요한 경우, “분산공유 6대 실험시설” 적극 활용

※ 기타 사항은 관련 규정 및 지침, 금번 공고 안내서 참조

2. 신청·접수 및 선정평가



▶ 과제선정절차

수행 단계	수행 내용
공고	■ 과제신청절차 방법 등을 포함하여 신규과제 공모 및 설명회 개최(건교평)
신청서류 접수 및 사전검토	■ 연구개발계획서 및 부대서류 제출(연구기관) 및 접수(건교평) ■ 신청서류의 적합성 등 접수요건을 검토하여 접수, 보완, 반려 여부 결정(건교평) ※ 보완요구를 받은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등 수정·보완하여 기한내 제출하여야 하며, 보완요구사항 미반영시 반려조치
평가위원회 평가	■ 발표평가: 연구제안의 충실도, 추진전략의 구체성 등에 대한 평가
연구계획 보완	■ 평가위원회, 건교평의 수정·보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 보완(연구기관)
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	■ 신청기관에 선정평가결과 통보 ■ 협약 체결 후 연구 착수

➡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

■ 신청자격

- **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에 의한 기관**
 - 국/공립 연구기관
 - **정부출연연구기관, 특정연구기관** (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/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 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/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, 특정연구기관육성법)
 - **대학, 산업대학, 또는 기술대학** (고등교육법)
 - **기업부설연구소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** (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)
 - 의료법인 중 연구인력/시설 기준을 만족하는 의료법인 (의료법,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)
 - **국내외 연구기관이나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**(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)
 -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도/감독을 받는 **공공기관**
 - **각 협회와 각 공제조합**(건설산업기본법), **해외건설협회**(해외건설촉진법), **건축사협회**(건축사법), **한국지하수지열협회**(지하수법), **항로표지기술협회**(항로표지법), **한국해양조사협회**(측량/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), **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**(주택법)
 - **산업기술연구조합**(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)
 -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**법인인 연구기관**
 - **상기 학협회 이외의 학협회는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확보한 기관**(학사 이상 학위 소지하고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5명. 2명 이상은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, 독립된 연구시설 확보)

➡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

■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참여제한

-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3개 이상 수행하는 연구책임자(주관, 협동) 및 5개 이상 수행하고 있는 참여연구원(연구책임자 포함) 또는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의 사업단장 및 연구단장, 사업단 핵심연구책임자
 ※ 단, 수행중인 과제가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4개월 이내에 종료될 경우나 기획연구는 과제 수에서 제외
-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 전일까지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또는 기관
-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 자료를 조작한 경우에도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, 선정 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 취소,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

➡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

■ 연구단 컨소시엄 공모과제 유의사항

- 연구단장은 연구단과제 내 1개 세부과제 연구책임자로만 참여하되, 연구단장으로 선정된 이후에는 타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
- 연구단 컨소시엄공모과제에서 주관, 협동, 공동, 위탁연구책임자 로 신청한 자는 분리 공모과제의 공동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없음
- 세부과제 참여 연구기관(주관, 협동, 공동, 위탁)은 연구단과제 내 타 세부과제의 연구기관(주관, 협동, 공동, 위탁)으로 중복참여가 가능하나, 1개 기관이 세부과제의 연구기관(주관, 협동)으로는 2개까지 참여 가능
- 연구개발의 집중과 연구자원의 결집을 위해 동일 세부과제 내에서 단일 기관은 주관(협동)연구기관, 공동연구기관 또는 위탁연구기관 중 1개에 한하여 참여토록 함
- 연구성과 달성가능성 제고 및 연구수행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참여율은 30%이상을 확보하여야 함

➡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[계속]

■ 연구인력사전등록

-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(주관, 공동)는 사전등록기간동안 건교평 연구관리시스템의 **연구인력사전등록**을 통하여 해당경력 및 관심분야를 등록하여야 하며, 등록된 인원내 한하여 **연구책임자(주관, 공동)로 참여 가능**

※ 연구인력 사전등록제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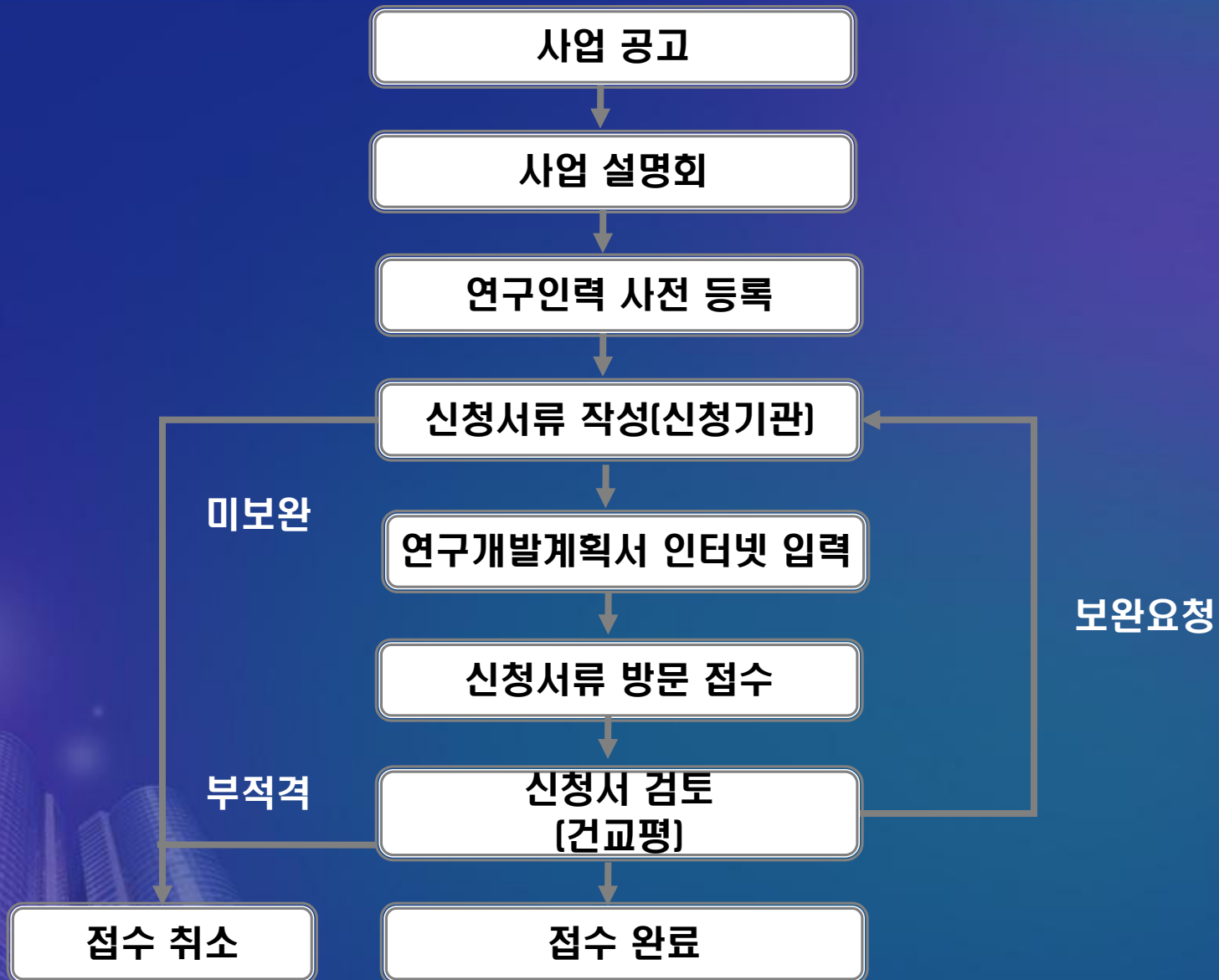
공고된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가 신청 접수전 전문분야, 주요경력 및 관심분야 등을 전문기관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우수연구개발자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정·투명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



■ 연구인력사전등록 요령

-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**연구관리시스템**(<http://ctpass.kictep.re.kr>)에 접속
- [공고]메뉴 - 사전등록항목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과제를 선택하여 인력정보를 입력

➡ 신청서 접수 및 처리 절차



➡ 신청서 접수 및 처리 절차 (계속)

🕒 신청서 접수 일정

공고기간	연구인력사전등록	인터넷입력	신청서접수
2011.10.14~11.14	2011.10.31~11.4 18:00까지	2011.11.7~11.13 18:00까지	2011.11.14 16:00까지

※ 신청서 접수 장소 :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(관양동 1600번지)
신창빌딩 **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층 1회의실**

➡ 신청서 접수 및 처리 절차 (계속)

🕒 신청 서류

- 신청 공문(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) 1부
- 연구개발계획서(A4용지, 좌철제본) 2부
- 중소기업 확인서 1부(해당시)
-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
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 1부(해당시)
- 참여기업 주요실적 및 연구개발결과물 활용계획 1부(해당시)
- 사업자등록증(기업) 1부(해당시)
- Letter of Intent 등 1부(해당시)
- 장비구축계획서(1억원 이상, 기업은 3천만원 이상) 1부(해당시)
- RFP와 연구개발계획서 대비표 1부
- 성과점검기준표 1부
- 연구비 소요명세서 1부
- 연구개발계획서 데이터 CD(한글파일) 1매

🎯 경쟁신청과제 평가항목

구분	기준항목	세부평가항목	점수
정량 평가 (10점)	연구진의 기술개발 업적	공모과제 관련분야 국내외 특허등록 및 건설신기술 인증 건수	2.5
	연구컨소시엄의 주요실적	공모과제 관련분야 실무프로젝트 수행실적 건수	2.5
	연구진 구성의 적정성	연구과제 참여기관수의 적정성	2.5
		산업체 참여비율의 적정성	2.5
발표 평가 (90점)	연구개발 목표	최종 목표/성과목표의 명확성, 타당성	5
		연차별 연구목표/성과목표(지표) 설정의 적절성	5
	연구개발 내용	최신 기술동향 분석 및 사전계획의 충실성	5
		목표달성을 위한 연구내용 및 예상성과의 적절성	10
		세부과제 구성의 타당성 및 연계성	5
		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절성	5
		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방법의 적정성, 구체성, 타당성	5
	추진전략 및 계획	연구수행체계 구성의 타당성	10
		연구인프라 및 연구지원시스템의 적절성	5
		연구성과 활용방안의 적절성 및 구체성	10
		연구성과 실용화 및 정책제안 가능성	5
	활용방안 및 실용화(정책제안) 가능성	개발 기술의 기대성과(기술적·경제적) 및 파급효과	5
		해당분야 연구수행 실적	5
		연구과제 기획능력	5
		연구단 관리능력	5
	소계		100

※ 부합성평가 및 중복성평가 결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부합되지 않거나 중복된다고 판정시 탈락조치, 60점 미만시 탈락조치

● 단독신청과제 평가항목

구분	기준항목	세부평가항목	점수
발표 평가 (90점)	연구개발 목표	최종 목표/성과목표의 명확성, 타당성	5
		연차별 연구목표/성과목표(지표) 설정의 적절성	5
	연구개발 내용	최신 기술동향 분석 및 사전계획의 충실성	5
		목표달성을 위한 연구내용 및 예상성과의 적절성	10
		세부과제 구성의 타당성 및 연계성	5
		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절성	5
		추진전략 및 계획	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방법의 적정성, 구체성, 타당성
	연구수행체계 구성의 타당성		10
	연구인프라 및 연구지원시스템의 적절성		5
	활용방안 및 실용화(정책제안) 가능성	연구성과 활용방안의 적절성 및 구체성	10
		연구성과 실용화 및 정책제안 가능성	5
		개발 기술의 기대성과(기술적·경제적) 및 파급효과	5
	연구단장의 기획·관리능력	해당분야 연구수행 실적	5
		연구과제 기획능력	5
		연구단 관리능력	5
연구수행실적 및 가치	공모과제 관련분야 국내외 특허등록실적 및 가치	5	
	공모과제 관련분야 국내외 실무프로젝트 수행실적 및 가치	5	
소계			100

※ 부합성평가 및 중복성평가 결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부합되지 않거나 중복된다고 판정시 탈락조치, 70점 미만시 탈락조치

🎯 가점 및 감점 기준

■ 연구수행형태에 따른 가점

- 대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서
 - 중소기업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 : 1점
 -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: 2점
- 기업 이외의 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이고,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: 1점
-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 : 2점

■ 총연구비에 대한 연구비 부담비율에 따른 가점

- 총연구비에 대한 연구비 부담비율에 따른 가점 부여
 - 신청기관 중 연구비 부담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 : 1.0점
 - 그 외 기관은 최대 연구개발비 부담비율을 기준으로 연구개발비 부담비율에 따른 가점 부여

➡ 가점·감점 기준 (계속)

🕒 가점 및 감점 기준 (계속)

■ 추적평가결과에 따른 가점 및 감점

- 『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』의 가점 및 감점 기준에 따르되, 이 지침 시행 이전에 협약체결 된 과제의 최종평가결과에 따른 가점 및 감점은 종전 지침에 의함
-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 : 2년간 2점 가점
- 최종평가결과 최하위등급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 : 2년간 2점 감점
- 최종평가결과 하위등급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 : 2년간 1점 감점

■ 기타 가감점 : (공고-20호) 공고안내서 참조

3. 연구개발비 계상 기준



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	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기준	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중 현물부담이 허용 되는 비목 및 범위
- 대기업 :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- 중소기업,대기업이 아닌 경우 :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- 중소기업 :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-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이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: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- 그 밖의 경우 :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	- 대기업 :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- 중소기업,대기업이 아닌 경우 :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- 중소기업 :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	-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(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투자액의 50퍼센트 이내, 중소기업·대기업 이 아닌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) - 직접경비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, 재료비, 시작품 제작에 소요되는 부품비 (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부담액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, 중소기 업·대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)

비 목	세 목
인건비	내부인건비, 외부인건비 (2개)
직접비	연구장비·재료비, 연구활동비, 연구수당 (3개)
위탁연구개발비	위탁연구개발비 (1개)
간접비	간접비(1개) [인력지원비, 연구지원비, 성과활용지원비]

➔ 내외부 인건비

계 상 기 준

• 내부인건비

구 분	세부 산정 기준
연봉제 적용기관	연봉총액 × 참여율
연봉제 미적용기관	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 × 참여율

• 내부인건비 지급 세부기준 참조

• 외부인건비

구 분	세부 산정 기준
학생연구원	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을 적용 [인건비 풀링제 적용]
박사급 연구원	내부규정에 따라 자율결정(인건비 풀링제 적용)
임시직	내부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× 참여율

• 참여율은 참여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로 계산

유 의 사 항

• 학생연구원 인건비

- 학사과정 : 월 100만원 , 석사과정 : 월 180만원
- 박사과정 : 월 250만원

• 인건비 풀링제 적용 연구원은 **연구책임자가 소속된 대학에서 학위과정**(학사, 석사, 박사, 박사 후 연구과정) 중에 있는 연구원임

• 학생연구원 인건비는 법정부담금이 포함되지 않으며 **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 불가**

• 타 기관 급여를 받는 학생연구원 인건비 지급 불가

• 지원부서 인력의 인건비 지급 불가

• 신규로 고용된 연구원(외부인건비, 참여율 100%)
근로(고용)계약서, 국민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제출

➡ 연구장비·재료비

계 상 기 준

- 연구장비·재료비는 실 소요 금액으로 계상
- 시험분석료는 시험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
- 제작하고자 하는 시작품·시제품·시험설비에 대한 내역 및 연구비 산정자료 제출
- 현물 계상
 -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상각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당해 과제 사용율을 감안한 비용 계상
-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**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**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NTIS)에 기등록된 장비의 **재활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**한 후 계상

유 의 사 항

- **연구기자재는 1개월 이상 해당 과제에 사용**(1개월전 도착, 설치 완료 기준)
- **계상 불가 항목**
 - 연구수행기관의 내부 기자재, 시설의 임차 비용
 - 과제와 무관한 사무기기, 가전제품 등 범용화 된 기자재
 - 기자재 수리비 및 유지보수비, 업그레이드비
-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**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**는 취득 후 **30일 이내에** 전문기관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·관리
[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등록 내역 제출]
- **1천만원 이상 기자재 정산시 연구장비 구입내역서** 제출
- 취득한 연구기자재는 라벨을 반드시 부착, 관리대장 등재
- 연구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연구시설 및 장비 구입시 전문기관장 승인을 얻어야 함

계 상 기 준

- 연구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계상.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 소요 금액 계상
-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·비품 구입·유지비용은 대학 연구실만 계상
- 회의비는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외부기관과의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식비, 다과비, 장소임차비 등 포함
- 식대는 참여연구원의 야근 또는 특근식대 계상
- 사무용품비, 인쇄비, 전문가활용비, 교육훈련비 등
- 계상 불가 항목
 - 내부차량비, 차량임차비, 유류비 등 연구용도 외 비용
 - 세미나, 학회 워크샵 참석시 개최기간에서 숙박, 식사를 제공할 경우 해당 비용
 -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기료, 상하수도료 연료비, 경상 피복비, 휴대폰 사용료 등
 - 종신 학회비, 연회비

유 의 사 항

- 기관 내부 참여연구원의 중식비, 회의비, 회식 및 유흥성 경비로 집행 불가
- 야근/특근식대 단가 자체규정 없을 경우 1회/1인당 8천원 이하로 집행
- 회의장소 및 야근/특근 장소와 먼 거리에서 사용 지양
- 연구비카드 사용 승인과 관계없이 주류(와인, 호프 등)가 주 판매인 가맹점 사용금액 불인정
-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비용은 계상된 연구비 내 집행
- 분할 결제, 주류 구입 불가
- 기자재 수리비 및 유지보수비 집행 불가
- 야근/특근 교통비 지급 불가
- 과학문화활동비,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용은 연구활동비에서 집행 불가
- 연구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국외출장은 전문기관 승인을 얻어야 함

계 상 기 준

-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/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으로 **인건비의 20% 이내**에서 계상
- **미지급인건비는 참여율 최대 30%이내 산출**

유 의 사 항

- **계획대비 초과집행 불가**
- 현금/상품권/선물비로 집행이 불가
- **평가 관련 자료** 사용실적보고서에 제출
- **참여연구원(연구책임자 포함)에게만 지급**

주 의 사 항

- ❖ 연구수당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기관별로 참여연구원에 대한 **평가기준** (기여도 평가) 및 지급기준을 반드시 마련한 후 집행
- ❖ 연구수당은 **총 연구수당의 50%이상을 연구책임자에게 지급불가**
- ❖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수당 차등 지급
(80점 이상 : 인건비의 20% 이내, 80점 미만 70점 이상 : 인건비의 15%이내,
70점 미만 60점 이상 : 인건비의 10% 이내, 60점 미만 : 0%)

계 상 기 준

- 당해 연구과제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
 - 인건비(미지급 제외)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**40%이내**에서 계상

유 의 사 항

- 비목별 연구비 계상 및 집행은 본 과제와 동일
- 인건비(미지급 제외)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% 초과 불가

계 상 기 준

- 인건비(미지급 제외)와 직접비(현물 제외)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율 곱하여 계상(2010년 5월 19일 협약부터)
-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비영리기관은 17%,
영리기관은 5%범위에서 계상
 - 인력지원비
 - 연구지원비
 - 성과활용지원비
- 영리기관에 대하여는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, 연구보안관리비, 연구윤리활동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계상
- 간접비율은 매년 고시되는 일부터 익년 고시되는 날의 전날까지 적용(2010년 간접비율 5월 19일 고시)

유 의 사 항

- 계획대비 증액하여 집행 불가
- 세세목간(인력지원비, 연구지원비, 성과활용지원비) 변경 가능(영리기관은 계상 가능한 세세목 내 변경 가능)
- 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비용 집행 불가
- 과학문화활동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불인정
 - 연구기관 및 기관장 홍보와 관련된 경비
 - 연구기관 창립기념 등 연구기관의 행사관련 비용
 - 회환 등 개인성 경비
 - 홍보와 관련한 접대성 비용 및 선물비
- 간접비는 연구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정산하지 않으며 집행 관리 후 남은 금액은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
- 비목별사용명세서 작성시 집행액과 적립액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사용실적 보고시 적립한 근거 서류 제출

※ 기타 사항은 관련 규정 및 지침, 금번 공고 안내서,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등 참조

감사합니다.

